

의안번호	제 92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3 월 28 일 (제 258회)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3 월 12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92
----------	----

제출년월일 : 2007년 3월 1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정기적인 지역간 불균형 실태 조사 및 활용 등(안 6조)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종합적인 평가(안 9조)
-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안 제10조)
 -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안정적, 지속적, 재정적으로 지원
 -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 균형발전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구성·운영(안 제15조)
 - 공공연구기관에 연구전담팀을 설치하여 권역별 균형발전방안 연구
 - 공공연구기관에 지역협력단을 설치하여 평가 및 컨설팅 실시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라 함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낙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낙후지역**”이라 함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불균형 실태를 조사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군은 도의 종합적인 시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하여 권역별 발전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등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3. 지역별,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관련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수립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4조 1항에 의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불균형 실태조사) ①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간 불균형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불균형실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제 운영) ①중장기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가 재정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협약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도·점검)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의거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①도지사는 연1회 이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할 수 있다.

②평가 및 컨설팅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시·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2. 일반회계 등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3. 차입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기타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
4. 예비비 등

제12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①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군의 재정상황 및 제6조에 의한 불균형실태 조사결과와 제9조에 의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도지사는 2 이상의 낙후지역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등

제14조(위원회 설치) ①지역균형발전 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위원회는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 의하여 설치된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5조(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운영)** ①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 제시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권역별 균형발전 연구전담팀(이하 “연구전담팀”이라 한다)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연구전담팀은 설치된 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하며, 권역내의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의회 의원, 주민 등 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방안에서 낙후도가 음(-)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지원되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